

겸임교수임용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겸임교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격)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겸임교수에 임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9.02.21.)

1. 현장실무경험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자 (개정 2019.02.21.)
2. 본 대학에서의 강의 담당과목이 본인이 속한 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유사한 자 (개정 2019.02.21.)
3. 본인이 속한 기관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(유사경력 3년 이상)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 (신설 2019.02.21.)

제3조(임용절차 및 기간) ①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. (개정 2015.06.16.)

1. 각 대학(원)장 추천 (신설 2015.06.16.)
2. 총장의 제청 (신설 2015.06.16.)
3. 이사장이 임용 (신설 2015.06.16.)

②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 임용할 수 있다.

제4조(강사료 지급) 겸임교수의 강사료는 강사료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(개정 2019.02.21.)

제5조(임무) ①겸임교수는 임용계약서에 명시된 강의 이상을 하여야 한다.

②재직기간중에 발표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본 대학교 겸임교수임을 명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용서류) 겸임교수로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추천서

3-2-9~2 제3편 행 정

- 2. 이력서 1통
- 3. 재직증명서 1통
- 4. 학위증명서(학사, 석사, 박사) 각 1통
- 5. 경력증명서 각 1통
- 6. 주민등록등본 1통
- 7. 겸직동의서 (개정 2019.02.21.)

제7조(임용세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)

겸임교수봉급표

직 급	봉 급 액	비 고
겸임교수		